

2022년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공무원 결원 대체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임용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공무원의 휴직 및 30일 이상의 병가 또는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체 인력을 선발하고 수요 발생 시 즉시 충원
⇒ 결격사유 확인 후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일반직 9급 상당)로 임용

2. 자격요건(판단기준일: 2차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소지자
 - 2) 경 력: 6개월 이상 해당 직무분야(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모집분야 및 근무부서, 선발예정인원

모집분야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담당 예정 업무
통계조사 및 통계행정	의정부사무소	3명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 수행 및 통계자료처리 등 관련 행정 업무 수행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i/>) > 지방청 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참고

4. 선발 방법

○ 1차 서류전형

- 가.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나.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다.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면접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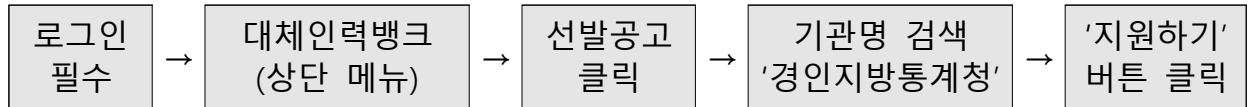
-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2.2.22.(화)~3.7.(월) 12:00**

나. 접수방법: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경인지방통계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개인서비스>대체인력뱅크>'이력서 등록' 필수 / 이력서 미등록 시 지원하기 불가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 미첨부 또는 손상된 파일인 경우 서류심사에 미반영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 자격증요건 해당자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기타 자격증 사본, 우대(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2022.3.10.(목) 14: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2.3.11.(금) 10:00

○ 면접시험(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2.3.15.(화) 10:00 / 의정부사무소

○ 최종합격자 발표: 2022.3.16.(수) 1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 합격자발표 메뉴 및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i/>) 채용정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 보유기간은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 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점에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행정팀 이명희(전화번호: 02-2110-7614)**